



2022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

2022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8월 16일
용인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예정 직무분야	채용예정 직 급	채용 인원	채용기간 (근무시간)	직무내용
입법지원 팀 장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1명	1년 (주40시간)	· 조례 제·개정 시 적법성 검토 지원 ·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· 주요정책사업 법률적 검토로 개선방향 제시

2. 근거규정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「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채용자격 기준

*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,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

용인시의회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거 주 지 : 제한없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

○ 응시요건

채용예정 직무분야	자 격 기 준
입법지원 팀 장	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○ 관련분야 경력 : 법률 분야 근무 경력

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※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별표5의3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4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5조 제4항)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


용인시의회

- 평정항목 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불합격 기준

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또는
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
- *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- 추가합격자 결정

- *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‘22. 8. 16.(화) ~ 8. 29.(월)	‘22. 8. 25.(목) ~ 8. 29.(월)	‘22. 9. 5.(월) 전·후	‘22. 9. 7.(수) ~ 9. 8.(목) 중	‘22. 9. 13.(화) ~ 9. 14.(수) 중	‘22. 9. 20.(화) 전·후
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공고 확인 : 용인시의회 홈페이지(council.yongin.go.kr) 공지사항란 참조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**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**
- 인성검사·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

6.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8. 25.(목) ~ 8. 29.(월) / 3일간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※ 인터넷 접수 불가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- ※ 응시수수료 : 입법지원팀장 7천원

방문 접수

- 접 수 처 :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(시의회 1층)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, 토·일요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
- 용인시청 민원여권과(시청 1층)에서 응시수수료(수입증지)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-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
등기우편 접수

- 주소 : (우)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
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- ※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
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00) 유의
- ※ 우편봉투 겉면에 “2022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
- 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(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)
- ※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7. 제출서류

- 주의사항
 -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 -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-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
 -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양면인쇄 금지



구 분	내 용	비 고
① 응시원서 1부	○ 응시수수료(용인시 수입증지) 납부 후 제출 ○ 단,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제 (「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」 제6조)	별지 제1호
② 이력서 1부	○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(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)	별지 제2호
③ 자기소개서 1부	-	별지 제3호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	-	별지 제4호
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1부	○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○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(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) ○ <u>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</u> ○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에 주당 근무시간,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, <u>별지 제5호>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</u> ○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는 <u>발행기관 관인 날인</u>이 있어야 함 ○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○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비정규직, 프리랜서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*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(예 :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) 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	



구 분	내 용	비 고
⑥ 최종학교 졸업 (학위)증명서 1부	○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○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	
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	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(http://www.nhis.or.kr) 또는 1577-1000 번에서 발급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※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	
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	○ 해당자에 한함	
⑨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	○ 해당자에 한함	
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	-	별지 제6호
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	-	별지 제7호
⑫ 동의서 각 1부	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	별지 제8호

8. 기타사항

○ 보수 및 근무시간

- 근무기간 :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
-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, 하한액의 120%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채용예정 직무분야	채용직급	연 봉 액		근무 시간
		상한액	하한액(기준액)	
입법지원팀장	지방행정주사(일반임기제)	77,932천원	51,928천원	주 40시간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

용인시의회

-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
-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·고용보험 적용
-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.
-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
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 제1항)
-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(council.yongin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

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(031-324-3968)